
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,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 요건을 개선함(안 제10조 · 제11조).
-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, 산림복지 전문업의 휴업 · 폐업 등 신고제도를 도입함(안 제22조 · 제22조의3).
-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, 실시계획 인 · 허가 의제를 추가함(안 제27조 · 제29조 · 제33조 · 제37조).
-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부금품 접수조항을 신설함(안 제55조의2).
-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산림복지전문업 휴업신고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추가함(안 제64조 및 제66조).

II. 검토의견

1.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‘변경’ 추가(안 제8조제1항)

- 안 제27조제2항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,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.
- 그런데 현행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산림복지지구의 ‘지정 및 지정해제’만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제8조제1항제3호의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산림복지지구의 ‘변경’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음.

<안 제8조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8조(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·2. (생략) 3. 산림복지지구 <u>지정 및 지정해제</u> 4. <u>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</u> 의 승인 5.·6. (생략)	제8조(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</u> 의 승인 5.·6. (현행과 같음)	제8조(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개정안과 같음) 3. 산림복지지구 <u>지정, 변경 및 지정해제</u> 4. (개정안과 같음) 5.·6. (개정안과 같음)

2. 지역주민 의견청취 인용조문 정비(안 제42조제5항)

- 현행법 제27조제3항은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5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안 제27조제5항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,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,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제42조제5항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이에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음.

<안 제27조제3항·제5항>

현행	개정안
제27조(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) ①·② (생략)	제27조(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) ①·② (생략)
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③ ----- ----- ----- 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(생략)	④ (생략)
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,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안 제42조제5항에 대한 수정의견>

현행	수정의견
제42조(토지등의 수용 등) ① ~ ④ (생략)	제42조(토지등의 수용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.	⑤ 제27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27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
○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